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13 선고 2018가단242684 판결 [연대보증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당진기업 주식회사

피고1. A

2. 주식회사 케이원건설

변론 종결무변론

판결 선고2018. 11. 13.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60,221,84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피고 주식회사 케이원건설 사이에 2016. 7. 2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케이원건설은 피고 A에게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 7. 26. 접수 제2998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김현정

별지